

의안 번호	641
----------	-----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08. 6. 27(금) · 중 구 청 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08. 6. 30(월)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08. 7. 9(수)

2. 개정이유

- 2007. 9. 1 종전의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기로 한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명칭변경 지침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주민센터」 명칭으로 일치 시키고
- 현재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보고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동명칭 변경(안 제4조, 제6조)
“동사무소” ⇒ “동주민센터”
- 자치센터 연간 운영 계획 보고일 수정(안 14조)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4.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행정자치부)

5. 참고사항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6.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07. 9. 1일자 종전의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토록 한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 보완 지침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주민센터」 명칭으로 일치 시키고
- 조례 제14조의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보고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 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12월중에 보고 하고 있어 불합리한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보고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심사 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붙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도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라.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마.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2. 시·군 및 자치구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 제20741호]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